

1종 손해사정 보수표

1. 손해사정 보수표

(단위 : %, 원)업

손해사정금액	요율	기준액(원)
3백만원 미만	-	500,000
~ 5백만원 미만	-	580,000
~ 1천만원 미만	기본료	660,000
~ 2천만원 미만	5.06	1,012,000
~ 3천만원 미만	4.18	1,254,000
~ 5천만원 미만	3.74	1,870,000
~ 1억원 미만	2.88	2,880,000
~ 2억원 미만	2.20	4,400,000
~ 3억원 미만	1.95	5,850,000
~ 5억원 미만	1.61	8,050,000
~ 10억원 미만	1.27	12,700,000
~ 20억원 미만	0.89	17,800,000
~ 30억원 미만	0.82	24,600,000
~ 50억원 미만	0.73	36,500,000
~ 100억원 미만	0.4 가산	-
100억원 초과	0.2 가산	-

2. 보수기준

- 가. 화재, 폭발, 풍수재, 농기계(자차) 등 재물 전손사고의 기본 보수는 상호 합의에 의해 손해액 확정금액의 50%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 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손사고라 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이 보험가액의 80%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, 부보율이 50% 미만인 일부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의 50%를 손해사정금액으로 적용한다. 다만 동산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나. 대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액확정금액의 1.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“손해사정금액”으로 정하여 상기 보수기준표의 요율을 적용한다. 다만, 손해사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요율의 기준액을 적용한다.
- 다.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손해사정금액 1천만원 이상 건 중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(또는 기본료) 보다 적을 때에는 차하위 기준액(또는 기본료)을 적용한다.
- 라. 가축재해보험의 주계약 및 축사특약 사고는 손해액의 70% 상당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적용한다.
- 마. 농기계종합보험 자기차량의 사고는 손해액의 70% 상당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적용한다.
- 바. 지급보험금액이 손해액 확정금액의 30% 미만인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손해액확정금액의 50%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.
- 사. 이 보수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에 의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.
- 아.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(특별약관 포함)에 대한 손해사정업무의 경우 “손해사정금액”은 약관상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 등의 공제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고, 위임자는 손해조사 위임 시 조사대상 물건(또는 내용)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.

3. 집단사고 보수기준

- 피해자 또는 피해세대수가 5인 이상인 집단사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한다.

구 분	할증율	비 고
10 ~ 30인 미만	손해사정 수수료의 1.2배	-
30 ~ 200인 미만	손해사정 수수료의 1.5배	-
200인 이상	손해사정 수수료의 2배	-

4. 단순사고 보수기준

- 적용대상 및 보수기준

대 상 건	기 준 액
• 가계성 도난사고	50만원
• 홀인원보험, 골프용품손해사고	50만원
• 가축재해보험 "말"보험	66만원
• 농기계종합보험 항공방제기	66만원
• 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 전 건	50만원
• 현장조사 면책건	50만원

주1) 면책건은 실질적인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는 건으로 청구포기, 연락두절 등 공제금 이하를 포함한다.

2) 풍수해보험은 별도 정한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.

5. 신종보험 보수기준

가. 대상 : 재물, 배상이 아닌 금융보험(BBB, 전자금융배상책임) 등으로 위임자가 합당하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.

나. 보수산정 (Time base)

- 조사자 경력별 적용

조사자 경력	시간당 보수
5년 미만	50,000원
10년 미만	70,000원
10년 이상	90,000원

- 보수산정 내역서를 제출한다.
- 보수산정의 시간은 현장조사, 보고서 작성 등 실제 소요시간을 적용한다.
- 건의 난이도, 노력도, 성과에 따라 해당 “시간당 보수기준”의 차상위 또는 차하위를 적용할 수 있다.
- 조사경력에 해당 보종의 업무처리 경력기준으로 한다.
- 일당은 별도 지급한다.
- 보수 5백만원 초과시 보험자와 별도 협의 후 산정한다.

6. 보험사기 조사건 성과급

가. 대상 및 지급기준

구분	대상	지급기준
우수조사	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위장사고, Moral 사고 입증 (단, 청구포기 징구 및 객관적인 조사과정 결과 근거로 함)	난이도와 노력도에 따라 추정지급보험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한다.
보험사기	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입건, 구속, 기소되어 형사판결 또는 민사판결로 보험사기 확정된 건	난이도와 노력도에 따라 추정지급보험금의 10~20배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한다

여비 · 교통비 보수기준

1. 지급기준

구 분		지급기준	비 고
교통비	항공임	실비	Economy
	철도임	KTX(일반실)	특실 제외
	선임	실비	1등정액
	대중교통	실비	택시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를 명확한 경우(2회)
	업무용 승용차	유류비 및 통행료 실비	-
일 비		30,000원	법정공휴일, 토요일 50,000원
숙 박 비		50,000원 한도	1일당 실비

2. 적용기준

가. 대한민국내 손해사정법인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(시단위 기준)의 여비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. 단, 보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타지역 소재 조사자가 시외 출장한 경우에는 상기 여비 · 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.

나. 대중교통 및 숙박비는 증빙 영수증(통행료 포함)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.

다. 업무용 승용차 이용시 기준 : 주행거리 × 1당 요금 ÷ 평균연비

- 거리기준 : 출발지와 출장기간의 실제 이동거리
 - 한국도로공사, 다음, 네이버 길찾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첨부
- 1당 요금 : www.opinet.co.kr (출장 시작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공시 유가)
- 평균연비

휘발유	경유	LPG
10.06	10.16	7.87